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ww.hira.or.kr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비급여정보부

2 6 4 6 5

원주우체국

요금후납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안내문]

받는 사람



HIRA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신자 : 의료기관장

(경유)

제 목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요청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752호(2023.4.12.)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 우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 예정으로, 고시 확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23년 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제출항목	공개대상(565개) 중 현재 고지(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
제출기간	7. 12.(수) ~ 8. 8.(화)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공개시기	'23.9.20.(수)

붙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비급여서비스 공급·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23.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 **(제출기간)** '23. 7. 12.(수) ~ '23. 8. 8.(화)

※ 제출기한 1-2주 전은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대상)** 총 565항목 중 현재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제출

【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총 565항목*)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공개항목(총 616항목) 중 '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1. 비급여 진료비용

상급병실료(3항목), 교육상담료(7항목), 검체검사료(9항목), 병리검사료(6항목), 기능검사료(46항목),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6항목), 초음파검사료(73항목),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2항목),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74항목), 주사료(1항목), 이학요법료(10항목), 정신요법료(3항목), 처치 및 수술료(38항목), 모발이식술료(5항목), 시력교정술료(2항목), 치과 처치·수술료(20항목), 한방검사료(7항목), 한방 시술 및 처치료(8항목), 치과 보철료(14항목), 예방접종료(56항목), 치료재료(133항목), 보장구(11항목)

2.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일반/건강/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정신적), 후유장애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3주이상), 영문진단서(일반),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천만원이상),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일반), 진료기록사본(1~5매/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CD/DVD/USB), 제증명서 사본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개('23.9.20)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원급 수시 등록』, 『의원급 수시 등록』을 통해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 예정으로, 고시 확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① 우리원 누리집(www.hira.or.kr) > ②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 인증서 로그인 > ④ 모니터링 > ⑤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 '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 '병원급 정기등록' or '의원급 정기등록' 제출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접속



②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 자세한 제출방법은 '우리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의원급 정기등록」 화면 내 게시물, YouTube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의원급자료제출) 참고